무배당하나바로연금PLAN보험 약관

무배당하나바로연금PLAN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2. 연금계약 피보현자가 삭아있을 때 계약자가 보현계약 체결시에 서택하 여근
 -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 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유형과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1. 연금유형 : 정액형, 체증형(5%체증, 10%체증)
 - 2.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10년, 15년, 20년확정), 상속연금형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장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 2. 연금계약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 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과 주피보험자

- 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 다.
-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가 제1항 제1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상속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2. 제18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 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 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 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 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5조 【해약환금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이 때 적용하는 이율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1.5%」을 적용하며, 이 보험의 최 저 보증이율은 3.0%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8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기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
 -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 외)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 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니다.

제20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1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3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8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1.5% 」
 - 2.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⑤ 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존연금은 제17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1.5% 」
 - 2.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3.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⑥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제17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27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따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6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8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9조 【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 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0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 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5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u>보험금지급기준표</u>

급 여 명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종신연금형·상속연금형 일시납보험료의 12% ◎ 확정연금형 · 일시납보험료의 20%(10년형) · 일시납보험료의 15%(15년형) · 일시납보험료의 10%(20년형) 	
전 시 전 III	씨 긴 진 미 제	개 인 연 금 형		파 Vio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 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 (12차년도까지 보증지급) ③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③ 2차년도 ~10차년도 : 직전년도 연금액의 5% 또는 10%를 매년 체증한 연금액 ③ 11차년도이후 : 10차년도 연금액 지급 (12차년도까 지 보증지급)	
		가 가 다 건 디디 쟁이	주 피 보 험 자	저 하 층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 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 (12차년도까지 보증지급)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2차년도 ~10차년도 : 직전년도 연금액의 5% 또는 10%를 매년 체증한 연금액 ◎ 11차년도이후 : 10차년도 연금액 지급 (12차년도까 지 보증지급)	
						종교험자	피보 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챙 전 집	확정연금형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정된 연 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또는 매월 지 급 (10년,15년,20년)
	상속연금형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년도 책임준비금을 「이 보험의 약 관대출이율-1.5%」에 의하여 계산 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 지급)

- (주) 1. 「책임준비금」은 이 계약의 연금계약순보험료를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1.5%」로 부리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생존연금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1.5%」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이 보험 의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3.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의 생존연금액은 10차년도까지 년단위로 체증하며, 10차년 도 이전 생존연금액은 전년도 생존연금액에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11차년도 이후 생존연금액은 10차년도 생존연금액으로 합니다.
 -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개시 후 12회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 는 12회까지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액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개시 후 10회, 15회, 20회까지의 생존연금 확정 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미지급된 10회, 15회, 20회까지의 생존연금액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6. 위의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과 제5호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사망시는 각각 보증 지급기간과 확정지급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의 생존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계약자는 생존연금지급 방법 중 책임개시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날부터 매년 지급하는 연단위 생존연금연액과 책임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되는날부터 매 월 지급하는 월단위 생존연금월액 중에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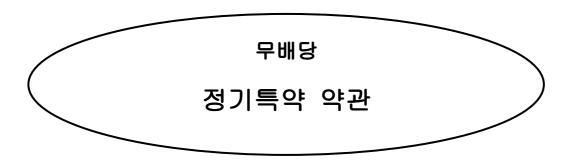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5.1.1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이션 및 사용의 되면 에 의인 것님.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13. 추락	W00~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sim W64
16. 불의의 익수	W65~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Y83~Y84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100 101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OF CHO WOR WITH WITH THE CHO	

- ※ 다음 사항은 재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 기 피부염(L23.3)
 - ②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상 $A00 \sim 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④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⑦ "법적 개입" 중 처형(Y35.5)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무배당정기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3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 【보험금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제17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무배당정기특약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 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재해분류표(이하 "재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망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아 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 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 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7조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전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시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가 되었을 때 지급될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 전환일 현재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전 2년 이내에는 이 특약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 이 특약을 전환할 경우에는 회사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⑤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급 여 명 지급사유		
11 UP H 51 J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	1,000만원	
사망보험금	상태가 되었을 때		

<u>장해등급분류표</u>

등급	신 체 장 해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할 때
제1급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 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잃었을 때

1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급	신 체 장 해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1 4 4	[14. 전 기기 8 기의 8 기이 용고 다는 기기 8 기에 무깃한 8 에밀 8 기이 음ᆻ일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
	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 미성 또는 연속의 신성을 성설인 사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 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
	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제5급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1. 구 커의 성격에 구깃한 경에를 경구에 남ᆻ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
	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5. 인 본의 첫째본가역 또는 물째본가역을 관진 경구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
제6급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됬글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 내용도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 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질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 간호"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 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 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 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ㅁ,ㅂ,ㅍ), 치설음 (ㄴ,ㄷ,ㄹ), 구개음 (ㅈ,ㅊ), 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 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 벨(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 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Σ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 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 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 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 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

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 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 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마디)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 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cm이상 또는 직경 5 cm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이상 10cm미만 또는 직경 2cm이상 5cm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 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 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 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 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 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 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 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 우

(별 표 3)

<u>재해분류표</u>

주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입원특약Ⅲ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무배당입원특약Ⅲ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특약보험료의 납입】

제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3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 【보험금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입원특약Ⅲ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 (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 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2(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원 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④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책임을 집니다.
- 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⑥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계속하여 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급여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아 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주계약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1)

<u>보험금지급기준표</u>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 1만원

주) 입원급여금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원 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별 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 00 \sim B 99
Ⅱ. 신 생 물	$C 00 \sim D 48$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 \sim D89$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E 00 \sim E 90$
VI. 신경계의 질환	$G00 \sim G99$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 \sim H59$
Ⅷ.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 60 \sim H 95$
IX. 순환기계의 질환	I 00 ~ I 99
X. 호흡기계의 질환	J 00 ~ J 99
X . 소화기계의 질환	$K00 \sim K93$
X 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 \sim L99$
XⅢ.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 00 \sim M 99$
X IV.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 00 \sim N 99$
X V. 임신, 출산 및 산욕	$O 00 \sim O 99$
X VI.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 \sim P96$
X WML.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 00 \sim R 99$
X 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sim T98$
X 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sim~Y~98$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정신장해(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②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③ 마약,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④ 치아의 보철에 의해서 입원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 한 경우
 - ⑥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치료,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① 미용상 또는 무통분만(無痛分娩)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의한 제왕절개 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 표 3)

<u>재해분류표</u>

주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암보장특약Ⅱ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무배당암보장특약Ⅱ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제4조 【특약의 무효】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7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특약보험료의 납입】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제18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암보장특약Ⅱ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의 해지(解止)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련 급부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제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2.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3조(특약의 책임개시일)에 정한 책임개시일 전일 이 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3조(특약의 책임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이하 "기타피부암"이라 합니다)이라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 별표2(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 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암치료비 지급(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2.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비 지급
- 3.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 암입원비 지급
- 4.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거나 또는

퇴원 후 통원하였을 때 : 암통원비 지급

제1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암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책임개시일의 전일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기타피부암 이외의암"으로 진단확정시, "기타피부암 이외의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에서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에서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상피내암으로 인한 암치료비는 제외)를 뺀 차액을 추가로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기타피부암"으로 인한 암치료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④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 니다.
- 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암입원비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⑥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또는 상 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 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동일한 암 또는 상피내암에 의한 입원이라도 암입원비의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⑦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암입원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암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⑧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계속하여 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7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 한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년) 이상 지났을 때
 -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진단 확정 후 암진단 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⑤ 제17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암수술확인서, 암입원증명서, 암통원증명 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아 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6관 기타사항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 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기교 . ㅋ	약모염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암치료비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 이외의 암"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1,000만원(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300만원(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피내 암"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만원(1회에 한함)
암수술비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 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200만원(수술 1회당)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피내암 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40만원(수술 1회당)
암입원비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0만원
암통원비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거나 또는 퇴원 후 통원하였을 때	3만원(통원 1회당)

- 주) 1. 암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2. 암입원비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원 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3. 암치료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에서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상피내암으로 인한 암치료비는 제외)를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보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인한 암치료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u>악성신생물분류표</u>

약관에 규정하는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 류 번 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4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8.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9.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10.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1.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3.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4.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6.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주) 1.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전암병소,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48), 심장, 수막, 뇌-중추신경 계 양성신생물(D15.1, D32, D33)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5.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치매간병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무배당치매간병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보험료의 납입】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치매간병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 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치매에 대한 치매간병 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한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치매"라 함은 기질성치매(器質性痴)로 진단확정되고, 의식장해(意識障害)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장해(判斷障害)가 있고, 또한 아래항목의 (가) ~ (마)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별표1 "용어해설"참조)를 말합니다.
- (가) 침상주변의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 (나)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 (다)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 (라) 음식물의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 (마)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 ② "치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치매간병비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치매로 진단확정 된 후 진단일을 포함	매월 치매간병비 발생해당일에
하여 "치매"가 9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정신과 또	50만원씩 60회 확정지급
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로부터 확인 받았을 때	(단, 최초1회의 진단에 한함)

제12조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매간병비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치매가 90일이상 계속되었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합니다.
- ③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2회 이후의 치매간병비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2.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④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⑤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2회 이후의 치매간병비의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 이율
 - 2.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용 어 해 설

1. 기질성치매(器質性痴매)

『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다』는 것은 다음의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기질성 치매』임을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서 진단확정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나)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가)에 의한 기질성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여기에서 『기질성 치매』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Ⅱ. 혈관성 치매	F01
Ⅲ. 달리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IV. 상세불명의 치매	F03
V. 치매에 병발된 섬망	F05.1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의식장해(意識障害)

『의식장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인지(認知)하고,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로 부터의 자극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의식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의식에 장해를 입은 상태를 『의식장해』라고 말합니다. 『의식장해』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의식혼탁(意識混濁)』과 『의식변용(意識變容)』으로 나누어 집니다.

『의식혼탁』이란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며 그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라 경도(經度)의 경우 경면(傾眠: 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자극에 의해 각성(覺醒)하는 상태), 중도 (中度)의 경우 혼면(昏眠: 각성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강한 자극에는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상태), 고도(高度)의 경우 혼수(昏睡: 정신활동은 정지되고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로 나누어 집니다.

또한, 『의식변용』이란 특수한 『의식장해』로서 이것에는 Amentia(의식혼탁은 경미하지만 응답은 종잡을수 없어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노망(비교적고도(高度)의 의식혼탁-의식의 정도가 동요되기 쉽다-과 함께 착각(錯覺), 환각(幻覺)을 수반하는 불안(不安), 불온(不穩), 흥분(興奮)등을 나타내는 상태) 및 몽롱한 상태(의식혼탁의 정도는 경미하지만 의식의 범위가 좁고, 외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

악할 수 없는 상태) 등이 있습니다.

3. 판단장해(判斷障害)

『판단장해』란 다음 사항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시간의 판단장해 : 계절 또는 아침·점심·저녁의 어느 하나도 인식할 수 없음
- (나) 장소의 판단장해 : 현재 살고 있는 자기집 또는 현재 있는 장소를 인식할 수 없음
- (다) 인물의 판단장해 : 평상(平常)시 접하는 주위 사람을 인식할 수 없음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7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2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 【보험금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조(피 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 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 (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 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에 따라 재해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2. 보험기간 중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④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재 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사망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해약환급금】

- ①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주계약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재해사망 보 험 금	재해사망 및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시	계약보험가입금액 의 100%

(별 표 2)

<u>재해분류표</u>

주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u>장해등급분류표</u>

등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 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잃었을 때

1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급	신 체 장 해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1 4 4	[14. 전 기기 8 기의 8 기이 용고 다는 기기 8 기에 무깃한 8 에밀 8 기이 음ᆻ일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
	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 미성 또는 연속의 신성을 성설인 사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 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
	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제5급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1. 구 커의 성격에 구깃한 경에를 경구에 남ᆻ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
	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5. 인 본의 첫째본가역 또는 물째본가역을 관진 경구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
제6급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기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 내용도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 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질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 간호"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 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 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 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ㅁ,ㅂ,ㅍ), 치설음 (ㄴ,ㄷ,ㄹ), 구개음 (ㅈ,ㅊ), 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 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 벨(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 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Σ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 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 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 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 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

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 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 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마디)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 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cm이상 또는 직경 5 cm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이상 10cm미만 또는 직경 2cm이상 5cm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 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 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 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 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 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 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 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 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재해상해특약Ⅱ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무배당재해상해특약Ⅱ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7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2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 【보험금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재해상해특약Ⅱ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 (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 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 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③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④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 ⑤ 제4항에 규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이 특약이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 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제1급의 재해장해급여금(주보험 및 특약의 보험금액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재해장해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 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장해급여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 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아 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재해장해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주계약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 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1)

<u>보험금지급기준표</u>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재해장해 급 여 금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 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하	제1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제2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는 재애군규표에서 장아 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	제3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4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	제5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었을 때 	제6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별 표 2)

<u>재해분류표</u>

주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u>장해등급분류표</u>

등 급	신 체 장 해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1급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All I C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현 글의 근둑이엉글 ᆶ고, 현 다디글 전한 경구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4.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
	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1. 면 군의 시력을 경우이 용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년 본과 도둑이용을 끊ᆻ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제3급	었을 때
7110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면 크긔 5대편필칭 1편필필 편한 공부에 사용에서 듯에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0. 단 더러의 5대단일당 1단일을 단단 중부터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4급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
	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 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제5급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
	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ш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리 사이 집 사이 집 사이 집 사이 집 때 어디를 내용
TII C 그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
제6급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6. 전 근기 첫째근기의 보는 올째근기의 어디의 1근기의 보는 2근기의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 내용도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 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질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 간호"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 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 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 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ㅁ,ㅂ,ㅍ), 치설음 (ㄴ,ㄷ,ㄹ), 구개음 (ㅈ,ㅊ), 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 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 벨(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 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Σ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 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 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 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 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

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 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 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마디)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 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cm이상 또는 직경 5 cm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이상 10cm미만 또는 직경 2cm이상 5cm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 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 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 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 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 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 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 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 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 우

무배당 종신입원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무배당종신입원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3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종신입원특약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 중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 (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하며,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 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2(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원 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

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책임을 집니다.
- 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입원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급여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아 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중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주계약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1)

<u>보험금지급기준표</u>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1만원

주) 입원급여금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원 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 00 \sim B 99
Ⅱ. 신 생 물	$C 00 \sim D 48$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 \sim D89$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E 00 \sim E 90$
VI. 신경계의 질환	$G00 \sim G99$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 \sim H59$
Ⅷ.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 \sim H95$
IX. 순환기계의 질환	I00 ~ I99
X. 호흡기계의 질환	J 00 ~ J 99
X I . 소화기계의 질환	$K00 \sim K93$
X 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 \sim L99$
XⅢ.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simM99$
X IV.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 00 \sim N 99$
X V. 임신, 출산 및 산욕	$O 00 \sim O 99$
X VI.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 \sim P96$
X WML.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 00 \sim R 99$
X 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sim T98$
X 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 01 \sim Y 98$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정신장해(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②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③ 마약,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④ 치아의 보철에 의해서 입원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 한 경우
 - ⑥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치료,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① 미용상 또는 무통분만(無痛分娩)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의한 제왕절개 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 표 3)

<u>재해분류표</u>

주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단체취급특약 약관

단체취급특약 약관

- 제1조 【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 제2조【대표자의 선정】
- 제3조 【보험요율의 적용】
- 제4조 【보험료의 납입】
- 제5조【**단체취**급특약의 소멸】
- 제6조 【보통 보험약관의 준용】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 【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취급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통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 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동업자단체(변호사회, 의사회 등)로서 5인 이상의 구성 원이 있는 단체
- 2.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이하 "단체"라 합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3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

- ① 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단체취급특약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 납입으로 간주합니다.
 - 3.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 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경우 차 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보통 보험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8조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1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13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제16조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의 특칙】

제17조 【다른특약의 취급】

제1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 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8조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 합니다) 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 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약관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1조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13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호적상의 배우자
 -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13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
- 5.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 6.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 7.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 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 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 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7조(다른특약의 취급)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구 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 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10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16조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의 특칙】

- ①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규정한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로 대체합니다.
- ③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 제17조(다른특약의취급)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주계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제17조 【다른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

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